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화해위원회(TRC)’ 아카이브의 탈식민적 전회

The Decolonial Turn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Archives

이경래(Kyong Rae Lee)

E-mail: kyongrae@gmail.com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 강사



논문접수 2026-07-13

최초심사 2026-07-16

게재확정 2026-07-28

ORCID

Kyong Rae Lee
<https://orcid.org/0000-0001-6995-1574>

초 록

본 연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기록 통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민주화 이행기에 ‘진실과화해위원회(TRC)’ 아카이브가 단행한 탈식민주의 전회의 역동과 구조적 한계를 규명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하에서 국가 아카이브는 인종주의적 규율과 감시를 집행하는 물질적 통치 장치였다. 1994년 체제 전환 이후 등장한 TRC 아카이브는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에 맞서, 해리스의 ‘정의의 아카이브’ 철학을 경유하며 국가 독점의 기록 주권을 서발턴의 목소리로 이동시키는 급진적 실험을 감행했다. 관료적 문자 서사의 틈새로 피해자의 구술 증언과 일상의 기억을 밀어 넣음으로써, 아카이브를 상처와 정의가 경합하는 공적 공유지로 재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념비적 성취 이면에는 권력 이양기의 정치적 타협과 제도적 굴절이 낳은 탈식민적 딜레마와 새로운 기록학적 공백이 공존한다. 본 연구는 TRC 아카이브의 기록학적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성찰함으로써, 단순히 문서를 발굴하는 양적 개방을 넘어 ‘누가 기록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의 고통이 공적 기억으로 승인되는가’라는 아카이브 주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의 시간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탈식민적 아카이브의 실천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s of records governance under South Africa’s apartheid regime and examines the dynamic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decolonial turn undertaken b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archives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Under the apartheid government, state archives functioned as a material apparatus of governance through which racial discipline and surveillance were enforced. Emerging in the wake of the 1994 regime transition, the TRC archives initiated a radical experiment—responding to Derrida’s “archive fever” and drawing on Verne Harris’s philosophy of the “archive for justice”—that displaced the state’s monopoly over archival sovereignty in favor of subaltern voices. By injecting the victims’ oral testimonies and everyday memories into the fissures of bureaucratic, textual narratives, the TRC reconfigured the archive into a public commons where historical trauma and justice collide. However, beneath this monumental achievement, decolonial dilemma and a new archival gap coexisted, both catalyzed by institutional distortions and political compromises during the transfer of power. By simultaneously reflecting on the archival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TRC archives, this study transcends the quantitative opening of unearthing hidden documents to raise the critical question of archival sovereignty: who possesses the right to record, and whose suffering is validated as public memory?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expand the practical horizons of the decolonial archive in socially reconstructing the temporalities of state violence.

Keywords: 탈식민주의 전회, 진실과화해위원회, 아카이브 주권, 기억의 정치, 디지털 아카이브 윤리
Decolonial Tur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rchival Sovereignty, Politics of
Memory, Digital Archival Ethics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https://jksarm.koar.kr>

1. 들어가는 글

아카이브는 과거가 투명하게 안착하는 중립적 영토가 아니다. 데리다가 지적했듯이 아카이브는 언제나 기원과 권위, 법과 장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삭제되고 배제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르콘적(archontic)’ 권력의 형식으로 작동한다(Derrida, 1995, 2-3). 즉 아카이브는 단순한 보존의 기술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진실의 조건을 통제하는 통치의 장치다. 특히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체제에서 아카이브는 억압의 흔적을 축적하는 동시에 그 억압을 질서와 합법성의 언어로 재명명함으로써 지배를 재생산해 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체제는 이러한 식민적 아카이브 권력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국가의 행정기구와 보안(security) 기관이 생산한 방대한 기록들은 흑인 주체의 이동, 노동, 거주, 정치적 활동을 추적하고 규율하는 감시의 인프라로, 인종주의에 기반한 통치 합리성이 문서 형식으로 응축된 물질적 장치였다. 여기서 기록은 단지 억압과 폭력의 사후적 흔적이 아니라 이것들의 실무적 집행을 가능케 하는 행정적 기술이자, 식민적 통치의 언어였다. 다시 말해 아파르트헤이트의 아카이브는 과거를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재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국가 권력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1994년 넬슨 만델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이러한 기록 권력의 체제에 근본적인 균열을 가져왔다. 과거 청산과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 속에서 등장한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국가가 독점해 온 기록 주권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아카이브는 더 이상 통치와 감시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진실 규명과 책임, 증언과 애도, 화해와 공적 기억을 매개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 과정에서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 TRC) 아카이브는 단순히 과거의 범죄 사실을 수집·정리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기록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급진적·정치적 실험을 단행한다. 피해자의 증언과 가해자의 사면(amnesty) 신청, 조사 기록과 청문회 기록이 단일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교차·검증되면서, 아카이브는 더 이상 국가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경쟁하는 기억과 상처, 책임과 정의가 격돌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 공유지(commonspace)로 재편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TRC 아카이브는 탈식민주의적 아카이브 전회의 역사적 사례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데리다가 말한 아카이브 열병(archive fever)이 과거의 원초적 진실을 국가의 공식 기록 안에 완벽히 포착하려는 권력의 욕망인 동시에, 공식 기록의 ‘바깥’에 존재하는 타자의 기억을 선제적으로 지워버리려는 죽음 충동을 의미한다면, TRC 아카이브는 정권 교체기 대량 문서 소각이라는 물리적 파괴에 직면하며 이 열병의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TRC는 이미 불타버리고 왜곡된 국가 문서의 절대적 권위를 맹목적으로 복원하려는 열병적 욕망을 내려놓는다. 대신, 아카이브 속으로 피해자들의 생생한 구술적 증언(발화)과 민중이 간직한 일상의 기억을 밀어 넣음으로써, 기록의 주권과 진실의 무게추를 국가기록으로부터 서발턴(subaltern)의 목소리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인식론적 실험은 해리스(Verne Harris)가 제시한 ‘정의의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배제된 목소리와 상처를 공적 기억의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기록의 매개변수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고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해 온 기록 주권을 피해자 중심의 기억정치로 전환하려 한 TRC 아카이브는 기념비적 성취 뒤에 탈식민적 딜레마를 동시에 남겼다. 해방의 유토피아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이 대담한 이행기적 시도는, 정작 현실의 정치 체제가 마주한 타협과 구조적 제약 속에서 아카이브 특유의 배제적 성격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기록의 주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굴절과 새로운 형태의 기록 독점 현상은, 국가가 허용한 합법성의 경계가 어디까지나 지배 권력의 안위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정치적 합의와 연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운다. 결국 TRC 아카이브가 도달한 해방적 지평 이면에는, 제도적 아카이브 체제가 체제 수호를 위해 감추거나 은폐했던 거대한 기록학적 공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기록 통치 메커니즘을 추적하고, 이후 TRC 아카이브가 국가

독점의 기록 주권을 어떻게 피해자 중심의 기억정치로 변환시키려 했는지 그 역동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 과감한 실험이 노출한 구조적 한계와 그 내재적 모순을 살피고자 한다. 과거사의 전면적 진실을 표방하면서도 권력 이양기의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정작 아파르트헤이트의 구조적 폭력을 아카이브에서 배제해 버린 이 역설은, 이행기 국가 기구가 마주한 탈식민적 딜레마를 고스란히 집약한다.

과거사 청산의 핵심은 단순히 숨겨진 문서를 발굴하는 양적 개방에 있지 않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카이브의 주권, 즉 누가 기록할 권리를 가지는가, 누구의 고통이 공적 기억으로 승인되는가에 있다. 본 연구는 TRC 아카이브가 보여준 이행기 기록관리의 민주성과 그 이면의 구조적 한계를 함께 살핌으로써, 국가폭력의 시간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탈식민적 아카이브 전회의 실천적 지평을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2. 탈식민적 아카이브를 위한 이론적 프레임

본 장은 남아공 TRC 아카이브가 지닌 민주적 역동성과 그 탈식민적 딜레마를 규명하기 위해, 근대 서구 기록학을 지탱해 온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포스트주의적 기억 중심주의로 이행하는 이론적 지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첸킨슨 등으로 대변되는 근대 기록학은 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력, 행정적 유기성, 출처주의의 엄밀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아카이브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보관소로 정의해 왔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극단적인 국가폭력 체제하에서 가해자인 지배 계급이 생산한 공식 문서는 피지배자의 저항을 불법 폭동으로, 그들의 신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분류하는 식민적 통치 서사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기록의 법적 증거력을 우선시하는 증거 중심주의는 오히려 권위주의적 폭력이 남긴 일방적인 서사를 객관적 역사로 둔갑시키는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카이브의 식민 통치성과 정치성을 심문하는 기록학적 비판적 담론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아카이브의 중심축을 국가의 증거에서 서발턴의 기억으로 이동시키는 탈식민적 기록관리의 이론적 프레임을 제시한다.

국가의 증거를 해체하고 서발턴의 기억을 복원하려는 이 이론적 기획은, 기존 아카이브의 정적인 정체성을 뒤흔드는 스톨러(Ann Laura Stoler)의 통찰에서 그 결정적인 실마리를 얻는다. 그는 아카이브를 완결된 객체(archives as things)가 아니라 분류와 감시, 선택과 배제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과정으로서 아카이빙(archiving as a process)’으로 규정한다(Stoler, 2002, 87). 스톨러에게 식민 국가가 생산한 방대한 서류들은 지배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승리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피지배 사회를 결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지배층의 근원적 불안과 통치 강박이 문서 형식으로 응축된 편집증적 흔적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가동한 인종 분류표, 통행증, 감시 파일은 차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증명하는 알리바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흑인 주체의 신체와 이동을 격리·식별하며 인종화된 공간 질서를 실제로 가동시킨 통치 기술 그 자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톨러는 수많은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이 너무나 확신에 찬 태도로 식민주의 시기의 문서를 대항적으로 ‘거슬러 읽기(against the grain)’로 직행한 것을 해 비판한다. 대신 그는 아카이브를 대하는 훨씬 “겸손한 태도”를 바탕으로 먼저 “그 결을 면밀히 탐색하고 그것을 따라 읽을 것(read along it first)”을 제안한다(Stoler, 2002, 99-101).

스톨러에게 아카이브의 ‘결을 따라 읽기(along the archival grain)’는 결코 지배의 논리에 순응하는 연대기적 수용이 아니다. 여기서 ‘결’이란 문체와 어휘, 분류의 세목, 보고서의 구조적 배치, 기록의 과잉과 의도적 누락, 나아가 서류들 사이에 스며 있는 정동까지도 포괄한다(Stoler, 2002, 102). 공식 문서의 결을 고스란히 따라가다 보면 분류의 세목과 의도적 누락 사이에 겹겹이 얼룩진 “거친 표면(rough surface)”(Stoler, 2009, 53)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식민 제국이 얼마나 모호하고 불확실한 인식론적 불안 속에 절박하게 매달려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방증한다. 즉, 가해자인 지배 정권이 남긴 공식 기록 역시 결코 폐기처분될 쓰레기가 아니라, 그 왜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심문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통치 메커니즘을 역추적할 수 있는 유의미한 탈식민적 사료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해자의 기록을 결을 따라 독해하는 스톨러의 기획은, 비공개 비밀주의 속에 갇힌 기록을 ‘해방(liberation)’하고 서발턴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환대(hospitality)’하고자 하는 해리스의 정의의 아카이브 논의와 만나며 탈식민적 기록정치가 지향해야 할 이론적 프레임을 확장한다. 해리스는 근대 서구 기록학이 기록권의 안정을 위해 고수해 온 중립성과 객관성이라는 환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에게 아카이브는 과거의 사실이 정적으로 박제된 서고가 아니라, 기록의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투입하는 “정의의 부름(the call of justice)”에 응답해야 하는 역동적인 형성(becoming)의 공간이다(Harris, 2007, 5). 지배 권력이 부여한 고정된 의미망을 해체하는 이 소명은 근대 기록학의 그 어떤 제도적 이론보다도 선행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 해리스는 “기록의 외부로부터, 그리고 그 어떤 아카이브 이론이나 기록 생산 이론의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정의의 부름’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부름보다 더 중요한 소명”(Harris, 2007, 248)이며, “기록을 생산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은 곧 정의의 실현이자 부정의에 대한 저항”(Harris, 2007, 257)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리스가 주장하는 아카이브 정의란, 단지 국가정보기관의 폐쇄된 서고 속에 갇혀 있던 기록을 시민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물리적 개방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배서사가 획정해 놓은 사법적 구획으로부터 기록의 의미 자체를 구출해 내는 서사적 해방을 뜻한다. 이는 데리다가 통찰한바, 주권 권력이 기록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며 법과 영토를 통제하던 공고한 ‘거소 지정(domiciliation)’¹⁾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 정권 이양기 보안 관료들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감행한 대량 문서 소각이라는 물리적 파괴 앞에서, 해리스가 지향하는 정의의 아카이브는 불태워진 국가 문서의 인위적 공백 주변을 떠도는 억압된 자들의 기억을 공론장으로 적극 소환하여 국가가 독점해 온 기록의 시원적 주권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해리스는 거소 지정이 해체된 공간을 피지배 계급의 고통과 비명을 수용하는 무조건적인 환대의 장소로 전환할 것을 역설한다(Harris, 2007, 4-6). 기성 공식 문서의 완결성 아래 배제되었던 생생한 구술 증언과 트라우마의 신체적 저항 기억을 조건 없이 안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카이브는 언제나 불완전하며 기록되지 못한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탈식민적 아카이브는 완성될 수 없는 그 공백을 직시하며 환대받지 못한 피지배 주체들의 구술적 발화에 도리어 최고의 가치와 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톨러의 아카이브의 식민 통치성 비판과 해리스의 아카이브 정의론이 강력하게 교차·수렴하는 지점은, 아카이브의 중심축을 국가의 증거에서 다중의 기억으로 과감히 이동시키는 기억 중심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탈식민적 기록관리는 가해자 중심의 문자 문서가 지닌 독점적 권위를 타파하고, 문자로 포착되지 않는 구술 기록과 공동체의 상흔을 아카이브 공유지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배 기록의 결을 따라 읽는 정교한 통치성 심문과 배제된 피지배 계급의 구술을 공유지화하는 이중의 이론적 프레임을 디딤돌 삼아, 남아공 TRC 아카이브가 성취해 낸 기억정치의 민주적 역동성과 그 이면의 한계를 입체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3. 아파트헤이트 체제의 아카이브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아카이브는 단순한 기록의 저장소가 아니라 권력의 배치와 통치의 기술이 응축되는 정치적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아공의 아파트헤이트 체제는 식민적 기록 권력이 가장 정교한

1) 데리다에 따르면, 아카이브의 어원인 ‘아르케이온(arkheion)’은 통치관자(archon)의 주거지를 뜻하며, 아카이브의 역사적 성립은 권력이 기록물에 물리적 주소와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소 지정(domiciliation)’의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즉, 통치자가 기록이 머물 장소를 독점적으로 지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사유화와 정치적 규율 권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Derrida, 1995, 2).

방식으로 제도화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인종을 법적 범주로 고정하고 공간을 분리하며, 이동을 통제하고 노동을 관리하며 저항을 감시하는 전 과정에서 방대한 기록 체계를 가동하였다. 인종 분류, 고용, 이동, 결사, 부동산 매입, 여가 등에 대한 통제는 전국 수천 개의 정부 기관에 의해 문서화되었다. 여기에 보안경찰(Security Police), 군정보국(Directorate Military Intelligence), 국가정보부(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및 인종 격리를 위해 급조된 홈랜드(Homelands) 정권의 수많은 보안 기구들의 감시(사찰) 활동 기록이 더해졌으며,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던 개인과 단체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 또한 이 체제의 일부를 형성했다(Harris, 2000, 31). 이 거대한 아카이브는 국가가 사회를 해독하고 분류하며 억압·통제하기 위해 고안한 식민적 시선의 산물이다.

따라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아카이브를 분석할 때 핵심은 잔존하는 문서들의 평면적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정적인 완결된 객체(things)로 다루는 실증적 탐색에 있지 않다. 그보다 본질적인 과제는 기록의 생산, 분류, 등록, 보존으로 이어지는 아카이빙의 역동적인 과정(process) 자체를 심문하는 일이다. 즉, 국가가 아카이브라는 제도를 통해 누구를 어떤 신분으로 낙인찍고, 어떠한 행정적 범주를 고안하여 흑인 주체들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분류와 등록, 선별과 보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록관리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상적인 폭력의 통치 인프라로 작동했는지 그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아카이브를 네 가지 차원에서 검토한다. 첫째, 인종 분류와 등록의 기록 정치가 어떻게 국가적 선별과 배제의 토대를 형성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보안 국가의 감시 아카이브가 저항의 징후를 수집하고 정치적 적대를 관리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민주화 이행기 직전 기록의 삭제와 파기가 어떻게 또 다른 국가 전략으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출범 당시 TRC 아카이브가 직면한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피고자 한다.

3.1 인종 분류와 아카이브적 시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인종은 선형적으로 실재하는 생물학적 기호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법적·행정적 아카이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가공하고 발명해 낸 제도적 구성물에 가깝다. 국가는 이 인위적인 분류 체계를 경유하며 시민권과 거주권, 이동권과 노동권을 차등적으로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의 사후적 반영물이 아니라, 인종 자체를 국가의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활성화하는 능동적인 매개체였다. 다시 말해 아파르트헤이트는 군사적 물리력만으로 지탱된 체제가 아니라, 등록과 분류, 서류와 대장의 관료적 힘을 통해 차별의 구조적 조건을 생산하고 심어 넣은 통치체제였다.

국가가 수행한 인종 분류는 개인의 정체성을 서술하는 중립적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체들을 백인(white), 유색인(coloured), 원주민(native) 등의 위계적 범주로 구획하고, 이 행정적 범주를 교육, 노동, 주거, 정치적 대표성의 불평등한 차별적 구조와 연결시켰다(Posel, 2001, 98). 아파르트헤이트 국가가 규정한 인종 개념은 단순한 생물학적 지표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지위 및 생활양식과 조밀하게 결합된 사회적·법적 구조물로 작동했다. 이러한 분류는 출생, 혈통, 외모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자기 서술이나 정체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즉 국가는 존재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통치에 유용한 방식으로 인간을 재정의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했다. 아카이브는 바로 이러한 분류학적 폭력과 억압적 재정의의 흔적이 물화된 장소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아카이브적 시선은 사회를 한눈에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독성(legibility) 높은 대상으로 재구성하려는 열망으로 구체화되었다. 1950년에 제정된 인구등록법(Population Registration Act)은 인종 분류를 고정시키고 균일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강박의 산물이다. 모든 시민은 이 법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인종이 낙인찍힌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았다. 나아가 이러한 인종 코딩은 새롭게 구축된 전국적 차원의 인구 등록부(population register)라는 중앙집권적 데이터베이스로 집중되었다(Posel, 2001, 97).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개

별 주체의 거주지, 고용상태, 혼인 여부, 부양가족 등의 파편화된 정보 조각들은 서로 결합되어 그들의 인종 유형과 끊임없이 교차·검증되었다.

포셀(Deborah Posel)이 지적하듯, 이 거대한 아카이브 기획의 종착지는 모든 사회적 사실을 인종적으로 코딩하고 인종을 모든 사회적 측정의 단위로 삼아, 인구 전체를 철저히 서류 대장에 등재하고 꼬리표를 붙여 통제하는 것이었다(Posel, 2001, 100). 인구등록법은 이처럼 데이터의 집중을 통해 주체들의 유동성을 근절하고 특권의 위계 구조에 반영구적인 고정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 체제 속에서 한 개인의 인종 분류는 과거에 대한 행정적 낙인이자, 동시에 그의 미래의 자격과 전망을 재단하는 절대적인 판결로 기능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결벽증적 분류 작업의 이면에 언제나 인지적 불확실성과 지배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인종 경계의 모호함을 마주할 때마다 원주민을 디폴트(기본값)로 지정하여 분류함으로써 차별의 격리체계를 방어하고자 했다(Posel, 2001, 105). 이는 스톨러가 강조한바, 식민 권력이 완벽한 통제력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는 근원적 불안 때문에 도리어 더 편집증적으로 문서화에 매달렸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와 같은 분류의 핵심은 그것이 단지 제도적 기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기회 구조를 물질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개인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의 수준, 거주가능한 구역의 경계, 종사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는 행정 문서 속 인종 항목에 의해 기계적으로 할당되었다. 따라서 기록은 현실을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집행자였으며, 한 개인의 삶의 궤적을 미리 포획하는 통치 권력 그 자체였다. 국가는 개별 주체들을 기록을 통해 끊임없이 호명하고 격리함으로써 인종차별적 공간 질서를 재생산했다. 결과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의 아카이브는 국가폭력의 외부에 존재하는 중립적 사료가 아니라, 폭력을 사전에 기획하고 실시간으로 집행한 국가 행정의 중추이자 통치의 형식 그 자체였다.

3.2 보안 국가와 감시 아카이브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기록관리는 일상적인 인종 분류와 주민등록을 통한 격리 통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이르러 피지배층의 저항이 전면화되자, 남아공 정권은 체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조직 전체를 보안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형적인 보안 국가(security state)로 진화한다. 특히 보타(P. W. Botha) 정권은 자신이 직면한 위협을 총체적 공세(total onslaught)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총체적 전략(total strategy)을 선포했다(TRC, 1998). 그 아래에서 백인 의회와 내각에 기반한 문민 통치 절차는 국가안보관리체계(Nation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NSMS)와 국가안보회의(State Security Council)를 중심으로 한 병렬 통치 구조에 의해 잠식되었다. 그 결과 군·경·정을 비롯한 행정 부처 전반이 저항의 진압과 보안 통제라는 단일한 목적을 향해 결집했는데, 이는 국가 정치 전반의 군사화라는 국면과 경찰 기구의 정치화라는 국면이 맞물리며 진행되었다(Brewer, 1994; Grundy, 1986).

이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의 아카이브 체제 역시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 반체제 활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조직화는 물론 무장 저항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전방위로 사찰하고 포획하는 총체적인 보안 인프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 생산된 방대한 감시문서들은 일개 정보기관의 파편화된 수사 사료가 아니라, 보안 국가가 반체제 주체들을 식별하고 블랙리스트화하여 저항의 징후를 사전에 차단·파괴하기 위해 국가폭력의 핵심적 중추로 기능했다.

보안 국가의 감시 아카이브는 개인 파일, 정보보고서, 도청 기록, 심문 진술서, 내부 메모, 조직 분석 자료, 감시 명단 등 다양한 문서 형식의 복합체였다(TRC, 1998). 감시 기록은 주체들의 가시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내재적 잠재성까지 추적하였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회합이 열렸는지, 어떤 연설이 위험 신호로 분류되었는지, 어떤 학생조직과 교회 단체가 정치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미시 정보가 축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사실의 객관적 저장소라기보다 예측과 의심의 정동적 체계로 기능했다. 감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사후적으로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위험 군으로 분류함으로써 국가의 예방적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Brewer, 1994; Dlamini, 2020).

이러한 감시 아카이브의 핵심적 특징은 정당한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하고 초법적인 행정적 낙인을 전면화했다는 데 있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은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불온, 전복적, 공산주의적이라는 국가 안보의 이데올로기적 범주로 분류되었다(Brewer, 1994; Internal Security Act, 1982; Suppression of Communism Act, 1950²). 그리고 서류에 새겨진 이러한 기록상의 오명은 체포와 구금, 가택 연금과 조직 금지, 출판 검열 및 여권 발급 제한 등 신체를 직접 구속하고 삶을 파괴하는 물리적 탄압의 직접적인 방아쇠로 작동하였다(Brewer, 1994). 다시 말해 감시 아카이브는 정보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예비적 처분의 단계였으며, 공식적인 사법 절차 바깥에서 정치적 적대를 관리하는 우회적 통치의 형식이었다. 여기서 기록은 진실 규명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사전 배치를 위한 권력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또한 보안 국가의 아카이브는 권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동 속에서 강력한 통치력을 획득했다. 경찰, 정보기관, 행정부, 그리고 군과 지방 관료가 공유하는 기록은 단일한 중앙 파일로만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보안 국가가 가동한 NSMS라는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 속에서 교차 참조되며 재구성되었다. 전국에 배치된 통합관리센터(Joint Management Centres, JMCs)를 통해 여러 권력기관의 문서 흐름이 중첩되었던 이 체제는, 국가가 사회를 단편적으로 사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행정 영역의 정보를 결합해서 체제 전복의 징후를 촘촘히 포착하는 다층적 감시망을 구축하였다(Grundy, 1986; TRC, 1998). 이 정보망 안에서 정당한 노동운동은 치안 문제로, 평화적 학생 시위는 안보 위협으로, 자발적 공동체 조직화는 반란의 징후로 격하되었다. 즉, 파일의 축적과 유기적 연동은 사회적 요구나 정치적 항거를 치안적·안보적 제거 대상으로 환원하는 핵심 매커니즘이었다.

고문, 강제 실종, 비공식적 처형과 같은 초법적 국가폭력 역시 이러한 감시체제의 치밀한 기획 아래 수행되었다(TRC, 1998). 참혹한 물리적 폭력은 흔히 기록이 멈춘 고문의 밀실에서 자행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폭력의 주변부에는 감시와 심문, 첩보 수집의 문서들이 촘촘히 남겨졌다. 아파르트헤이트의 날것의 폭력은 아카이브의 텍스트로 완전히 박제되지 않지만, 동시에 아카이브라는 촘촘한 행정기록 없이는 결코 조직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남아공의 국가기록을 분석한다는 것은 폭력의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는 실증주의적 작업을 넘어,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화했던 감시와 의심, 분류와 예비적 처분의 관료제적 문서 구조 자체를 심문해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안 국가의 아카이브는 TRC가 후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난해하고도 모순적인 비평적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문서들은 국가폭력을 폭로하는 결정적 사료인 동시에, 이미 권력의 왜곡된 시선과 안보적 범주에 의해 오염된 지식 체계이기 때문이다(Harris, 2002). TRC는 이 기록들을 액면 그대로의 사실 확인 수단으로 삼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것들이 어떤 권력관계와 불안 강박 속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결을 따라 비판적으로 독해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보안 국가의 감시 아카이브에 대한 구조적 해독은 TRC 아카이브가 지닌 대안적·민주적 성격, 즉 국가 독점의 증거에서 서발턴의 기억이자 시민의 공유지로 나아가는 전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3.3 삭제와 파기의 정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기록 권력은 단지 생산과 축적을 통해서만 작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민주화 이행기에 가까워질수록 삭제와 파기, 은폐를 통해 자신들이 남긴 폭력의 흔적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다(Harris, 2000). 이 지점은 아카이브 정치학의 핵심적 분수령이다. 억압적 체제는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방대한 기록을 생산하지만,

2) Suppression of Communism Act 44 of 1950은 1976년 개정으로 Internal Security Act로 개칭되었고, 1982년 기존 보안 입법을 통합한 Internal Security Act 74 of 1982로 재편되었다. 두 법령의 병기는 이 연속적 계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체제가 붕괴하는 사법적 이행기에는 동일한 기록이 곧장 가해자 처벌과 책임 추궁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기의 기록 파기는 단순한 관료제적 행정 처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진실과 사법 단죄의 향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격렬한 권력투쟁 그 자체였다.

체제 전환이 가시화되자 보안 국가의 핵심 기관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공작과 반인도적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기 시작했다. 공공 기록을 체계적으로 파기하려는 주도권은 국가 보안의 심장부에서 발동되었으며, 직접적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밀 작전 명령서, 비공식적 처형과 고문의 흔적들이 최우선 대상이 되었다. 일부 문서는 보존기간 규정에 따라 공식 폐기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했으나, 그 본질은 단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철저한 정치적 자기보호였다. 이 가혹한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남아공의 국가 아카이브는 과거의 투명한 저장소가 아니라, 체제의 안위를 위해 전면적으로 검열된 잔여물로 전락했다(Harris, 2000).

실제로 TRC는 1990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선언과 민주화 협상이 시작된 직후부터 1994년 첫 민주 총선 전야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문서 소각 공작이 자행되었음을 폭로했다(TRC, 1998). 당시 정부기록보존소(Archives Service)는 아카이브법에 의거해 공공 기록의 무단 파기를 제어하고 사료적 가치를 지닌 문서를 보존하려 시도했으나, 보안 기구들은 이 법적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했다. 당시 군·경·정을 아우르던 NSMS 내부에는 민간 기록 관료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비껴간 독점적이고 초법적인 기록관리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내각의 비밀 결의에 따라 수십 톤에 달하는 보안 분류 기록물과 사찰 파일이 정부 청사 소각로와 국영 제지 공장에서 흔적도 없이 불태워지거나 파쇄되었다(Harris, 2000).

이러한 삭제와 파기의 정치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 결정적인 두 가지 기록학적 효과를 낳았다. 첫째, 새로운 민주 사회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온전히 재구성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적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이행기 정의가 요구하는 책임성과 역사적 기억의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참혹한 진실을 요구할 때마다, 은폐의 수혜자들은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료적 알리바이 뒤로 숨어 응답을 유예할 수 있었다. 둘째, 역설적으로 남겨진 기록마저도 무엇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공백을 통해서만 읽혀야 하는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즉, 아카이브는 존재하는 문서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의도된 부재와 결핍의 징후가 맴도는 정치적 각축장이 되었다(Harris, 2007; Stoler, 2009).

바로 이 지점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전환기 정의를 실현해야 했던 TRC의 아카이브적 고뇌와 근본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TRC는 폭력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국가기록에 의존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 기록이 이미 가해자들에 의해 오염되고 편향화되었음을 전제해야 했기 때문이다(Harris, 2002). 따라서 진실 규명은 잔존 사료의 해석 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아카이브에서 증발해 버린 기록, 파기된 파일, 삭제된 이름, 고의로 누락된 지시 체계의 공백 그 자체를 심문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침묵은 정보의 무(無)가 아니라, 은폐를 시도한 권력이 남긴 가장 선명한 흔적이다. 어떤 문서가 부재하는가를 추적하는 일은 곧 어떤 폭력이 국가 체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는가를 밝히는 일과 같다. 해리스가 강조했듯, 정의를 지향하는 아카이브는 존재하는 자료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게 된 자료의 정치학을 감당하는 투쟁의 공간이어야 한다(Harris, 2007).

민주화 이후 수립된 새로운 기억의 질서 역시 이 파괴된 아카이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새 민주 정부와 공적 기억 기관들은 과거를 민주적으로 재서술하고 국가폭력을 기록화하려 했지만, 그들이 딛고 선 출발점은 이미 보안 국가가 격렬하게 난도질해 놓은 불균등한 자료 체계였다. 즉, 남아공의 전환기 아카이브는 태생적으로 거대한 공백을 안은 채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TRC 아카이브에 부과된 과제는 과거 문서의 단순한 수거나 분류·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겨진 관료제의 서류와 강제로 사라진 것들의 흔적, 가해자의 오염된 파일과 생존자들의 날 것의 구술 증언 사이에서 새로운 진실의 형식을 직조해 내는 창조적 작업이었다(Harris, 2007). 남아공의 민주주의는 완전무결하게 보존된 기록의 토대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파기와 침묵으로 훼손된 아카이브의 잔해 위에서 시작되었다.

종합해보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기록관리는 인종 분류와 보안 감시, 그리고 이행기 직전의 조직적 소각에 이르기까지 통치의 전 과정을 물질적으로 조직한 권력의 인프라였다. 여기서 기록은 폭력의 사후적 증거물이 아니라, 이를 사전에 기획하고 집행한 통치 기구의 핵심 중추였다. 이러한 기록의 폭력적 역사성은 뒤이어 등장하는 TRC 아카이브의 존재론적 의미를 한층 명징하게 드러낸다. TRC가 마주한 대상은 중립적인 문서 창고가 아니라, 보안 사찰과 조직적 은폐로 오염되고 난도질당한 국가기록의 잔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TRC에 부여된 과제는 기성 관료제 자료의 실증주의적 수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보다는 기록 권력이 은폐하려 한 침묵과 공백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동시에, 배제되었던 서발턴의 구술 증언과 저항의 기억을 아카이브의 중심부로 환대하는 대안적 기억의 공유지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TRC 아카이브가 어떠한 제도적 형식과 사상적 긴장 속에서 구축되었으며, 지워진 기억들을 어떤 대안적 방식으로 배치하고 재구성했는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4. TRC 아카이브의 민주적 실험

탈식민주의와 아카이브 정의에 관한 이론적 지평은 남아공 TRC의 실천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TRC의 아카이브 구축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수집·분류·보존하는 행정 관료적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장기간 공고화해 온 지배 서사와 기록 독점 체제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하는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실험이었다(Harris, 2007; TRC, 1998). TRC는 기존 국가 권력이 설계한 근대 아카이브의 엄격한 문법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기록의 생산 주체와 보존 공간, 그리고 기록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배치했다.

이 장에서는 TRC 아카이브가 감행한 세 가지 차원의 민주적 실험과 이를 통한 기록 권력의 이동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 관료의 문자 문서 중심에서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발화하는 구술 증언으로 아카이브의 주권이 이동하는 주체의 전복을 분석한다. 둘째, 폐쇄된 서고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라디오와 TV 중계를 통해 아카이브를 전 사회적인 공론장으로 확장한 공간의 정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진실의 고백을 대가로 부여된 가해자들의 사면(amnesty) 기록을 통해, 사법적·법적 사실의 증명을 넘어 다층적인 역사적 진실이 교차하는 기억의 정치학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TRC 아카이브가 어떻게 국가폭력의 증거 보관소에서 탈식민적 기억의 공유지(communs)로 이행할 수 있었는지 그 역동적인 지형을 추적한다.

4.1 주체의 전복: 관료의 문서에서 피해자의 구술 증언으로

TRC 아카이브가 감행한 가장 급진적인 패러다임 전복은 기록을 생산하고 진실을 규정하는 주체(subject)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꾼 데서 비롯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하에서 남아공의 국가 아카이브를 가득 채우고 있던 주류 문건들은 백인 소수 정권의 행정 관료, 군 지휘부,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치안 경찰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생산된 공식 문서들이었다. 이 문서들은 식민적 지배 권력의 시선과 보안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가공된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피지배 민중을 테러리스트나 치안 교란 분자, 혹은 예비적 통제 대상으로 낙인찍고 분류하였다.

TRC는 이 공고한 관료적 기록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아파르트헤이트 역사 속에서 철저히 침묵을 강요받았던 서발턴의 구술 증언을 아카이브의 새로운 주인이자 핵심 동력으로 호출하였다. 위원회는 인권침해위원회(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e, HRVC)를 중심으로 남아공 전역의 오지와 도시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순회 청문회를 개최하였다(Boraine, 2000). 이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약 2만 1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수집하였고, 그중 약 2천 명의 육성을 공개 청문회장 전면에 배치하였다(TRC,

2003). 이로써 아카이브의 주권은 식민 통치를 집행하던 관료의 문서와 비밀 서고에서, 고통의 역사를 통과해 온 피지배 주체들의 구술과 목소리로 이동하였다 이는 공식 역사에서 철저히 소거되었던 주체들이 스스로의 서사를 기록하고 제도화하는 능동적 기록 행위자로 당당히 등장하는 주체적 전복의 순간이다.

관료적 공문서 중심에서 피해자의 구술로의 주권 이행은 단순히 기록의 매체나 보관 형태가 바뀐 기술적 전환을 넘어, 아카이브가 지닌 서사 구조와 존재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정형화된 행정 문서는 고통을 건조하게 수치화하거나 학살의 물리적 사실만을 파편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진실을 비인격화한다. 반면 피해자의 구술 증언은 문자가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비명, 탄식, 통곡, 그리고 기나긴 침묵의 순간들까지도 아카이브 내부로 거침없이 끌어들었다. 이러한 구술 기록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구조적 폭력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과 깊은 내면의 트라우마를 공적 기록의 핵심부로 복원해 냈다. 증언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음성의 떨림과 눈물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의 잔혹함을 폭로하는 가장 강력한 탈식민적 아카이브가 되었다 (Harris, 2007).

그러나 이러한 구술적 주체의 전복이 마냥 순탄한 해방의 서사로만 귀결된 것은 아니다. 대안적 아카이브의 내부에는 국가의 포섭 논리와 서발턴 기억 간의 긴장과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로스(Ross, 2003)가 예리하게 분석한 것처럼, TRC가 설정한 ‘중대한 인권 침해(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라는 사법적 범주는 주로 공적 영역에서 자행된 물리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여성이 일상과 신체에서 겪은 미시적이고 다층적인 고통을 탈색하는 젠더적 한계를 노출하였다. 더욱이 TRC가 방대한 구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정보관리 시스템은 피해자들의 정동적 서사에서 계량화 가능한 정보만을 분류·추출하면서 다시금 관료적인 서식과 제도적 규격 속으로 환원하였다(Wilson, 2001). 즉, 서발턴의 목소리는 아카이브의 중심부로 호출되는 순간에도, 국가 통합이라는 거대 서사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재차 편집되고 순화되었다(Posel & Simpson,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TRC 아카이브는 가해자의 언어로 정제된 공식 기록의 객관성이라는 근대 실증주의적 환상을 정면으로 해체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층적인 기억과 주관적 진실을 기록화했다는 점에서 기록학적 전회(archival turn)의 이정표로 남는다. 특히 TRC는 사실만을 중시하는 법적 진실 체제에 맞서, 피지배 주체들의 발화 자체를 공적 진실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개인적·서사적 진실(personal or narrative truth)’을 공식 천명했다 (TRC, 1998). TRC는 문서의 출처나 행정적 유효성만을 맹신하던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관행을 허물고, 억압받던 주체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아카이브의 새로운 시원으로 삼았다. 비록 포섭과 배제의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이 실험은 아카이브를 인간 존엄의 회복과 해방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려 했던 탈식민주의 아카이브 전회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 공간의 정치: 폐쇄된 서고에서 공유지로

TRC 아카이브가 보여준 또 다른 민주적 전위성은 기록이 생성되고 보존되는 물리적·지형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확장하고 재정의 했다는 점에 있다. 근대적 아카이브는 본질적으로 ‘바깥’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봉쇄와 격리의 공간이다. 통치 권력의 핵심 기밀과 역사적 문건들은 일반 시민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높은 담장 안, 먼지와 침묵만이 가득한 폐쇄된 서고에 갇히기 마련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공의 국가 아카이브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가폭력의 기획과 실행이 담긴 서류들은 관료제의 두꺼운 철문 뒤에 은폐되어, 권력의 정당성을 밀실에서 비호하고 지배의 영속성을 꾀하는 용도로 복무했다. 그러나 TRC는 권력자의 관저이자 밀폐된 거소로서 작동하던 전형적인 아르케이온의 공간을 사회적인 기억의 공유지(communs)로 과감히 전환했다(Boraine, 2000).

TRC는 기록을 사후에 수집하여 서고에 박제하는 전통적인 보관주의(custodianship)를 거부하고, 기록이 생산되는 청문회 현장 자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한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남아공의 국영 방송 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이하 SABC)은 매주 “Truth Commission Special Report”라는 다큐멘

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다양한 채널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가해자들의 고백을 전국에 실시간으로 송출했다(TRC, 1998). 이 전방위적인 미디어 전파는 아카이브의 물리적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먼지 쌓인 서고에 갇혀 있어야 할 기록들이 공중파를 타고 거실, 광장, 일터, 그리고 흑인집단 거주구(township)에 이르기까지 탈중앙화되어 전 사회적으로 편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문자 해독률이 낮아 문서 중심의 관료제 기록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구술적 매체인 라디오 중계는 식민적 지식 체계가 쳐놓았던 진입 장벽과 기록의 문턱을 무력화하는 민주적 효과를 발휘했다.

이러한 공간의 확장은 아카이브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관하는 곳에서 현재의 공동체가 함께 기억을 심리(審理)하는 역동적인 공유지로 변모시켰다. 라디오와 TV 스크린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적 아카이브의 실시간 인터페이스로 기능하며, 지리적·경제적 한계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수많은 민중을 증언의 목격자로 초대했다. 이제 시민들은 권위적인 관료의 허가를 얻어 출입증을 끊고 들어가야 하는 비밀 서고의 수동적 열람자에서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고통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경청하며 사회적 슬픔에 공명하는 능동적인 기록 주체이자 행위자(agent)로 호명되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는 가해자의 고백과 피해자 어머니의 통곡은 남아공 전역을 하나의 기억의 법정이자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동체적 애도의 인프라로 변모시켰다(Boraine, 2000; Ross, 2003).

물론 미디어 아카이브 공간이 갈등 없는 해방의 공유지였던 것만은 아니다. SABC의 공중파 중계는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를 고스란히 방출하는 동시에, 그것을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무지개 국가(rainbow nation)'라는 이데올로기적 통합 서사 안으로 포섭하는 통치 장치로 작동하기도 했다(Wilson, 2001). 화면으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사적인 복수의 갈망이나 사법적 처벌 요구보다는, 용서와 치유의 극적인 순간들이 시각적으로 과대 표상되었기 때문이다(Posel & Simpson, 2002).

이처럼 국가통합이라는 거대서사로 가공되는 한계를 남겼지만, TRC 아카이브의 공간 정치는 국가가 독점하던 폐쇄된 서고를 해체하여 사회적 기억의 공유지로 재구축하려 했던 지난한 탈식민적 실천이었다. 기록을 지배 계급의 밀실에서 시민들의 광장으로 이전함으로써, TRC는 아카이브가 지닌 민주적 잠재력을 극대화했다. 이는 기록의 정치성이 단순히 어떻게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라는 행정적·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전면화하고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아카이브의 개방성과 기억 연대의 문제임을 실천해 보였다.

4.3 사면과 기록

TRC 아카이브의 가장 복잡하고도 독창적인 성취는 사면(Amnesty) 제도와 기록의 결합을 통해 법적 사실과 역사적·서사적 진실의 교차점을 구축했다는 지점이다. 통상적인 과거사 청산 기구나 전범 재판소가 가해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사법적·응보적 정의에 집중하는 반면, 남아공 TRC는 '진실을 대가로 한 사면(truth for amnesty)'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적 사면 제도를 채택했다. 이는 1995년 제정된 '국가통합및화해증진법(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Act)'에 의거한 것으로, 가해자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정치적 동기를 증명하고 그 진말을 '온전하고 투명하게 고백(full disclosure)'할 경우에만 사면권을 부여하는 독특한 이행기 정의의 형태이다(Boraine, 2000, 258-299). 이 과정에서 생산된 방대한 사면 신청서와 청문회 고백 기록들은 사법적 면죄부를 위한 행정 문서를 넘어, 가해자 스스로 국가폭력의 메커니즘을 자백하고 증명한 전대미문의 대안적 아카이브로 축적되었다.

사면과 기록의 결합은 근대 사법 체계가 규정하는 법적 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인 형사 법정에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침묵할 권리(진술거부권)를 행사하며, 이로 인해 법적 진실은 검사와 변호인의 법리 공방 속에서 고도로 정제되고 파편화된 형태로 기록에

남는다. 그러나 TRC의 사면 청문회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사면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범죄 사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언제, 누구의 명령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고문하고 학살했으며 시신을 유기했는지 낱알이 진술해야 했다. 가해자들의 자백 기록들은 건조한 법적 진실의 증거를 넘어, 국가 기구가 어떻게 조직적·제도적으로 인권을 유린했는지 그 실행 체계와 숨겨진 배후를 밝히는 역사적 진실의 아카이브로 기능했다(Boraine, 2000).

더욱이 사면 기록은 가해자의 고백과 피해자의 증언이 단일한 공간에서 마주치고 격렬하게 교차하는 ‘사회적·대화적 진실(social or dialogue truth)’의 아카이브를 형성했다(TRC, 1998). TRC 아카이브 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가해자가 제출한 사면 신청서와 이에 맞서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이 던진 날카로운 심문 기록,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서사가 나란히 배치되었다. 이 지점에서 아카이브는 권력자나 국가가 독점한 단일하고 평면적인 서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체들의 기억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다성적(polyphonic) 텍스트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과 기록의 교차성 역시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록학적 성취의 이면에는, 대단히 냉혹한 사법적·정치적 타협과 기록의 오염이라는 딜레마가 있었다. 사면 청문회에서 가해자들이 쏟아낸 자백은 순수한 역사적 양심의 발로가 아니라, 단죄를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교묘하게 조율되고 기획된 법적 진실의 한계를 드러냈다(Posel & Simpson, 2002). 가해자들은 상부의 명령체계를 은폐하거나 자신들의 가해 행위를 전쟁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공무 수행으로 포장함으로써 아카이브를 또다시 오염시켰다. 더욱이 사면 기록의 축적은 가해자에게 즉각적인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피해자가 법원에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사법적 권리를 행정적으로 박탈한 결과였다(Wilson, 2001). 즉, 사면 아카이브의 형성은 정의의 완전한 실현이 아니라, 평화적 체제 전환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위해 서발틴의 사법적 권리를 반환한 가혹한 타협의 기록이기도 했다.

이처럼 타협과 오염이라는 질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RC의 사면 기록은 과거를 영구히 봉인하고 망각하기 위한 가해자의 알리바이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가해자의 자백이라는 렌즈를 통해 국가폭력의 어두운 내막을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인양해 낸 탈식민적 기억 투쟁의 산물이었다. 법적 진실의 협소한 틀을 깨뜨리고 다층적인 사회적·대화적 진실의 교차점을 기록함으로써, TRC는 기록이 어떻게 사법적 타협을 넘어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가시화했다.

5. TRC 아카이브의 한계

TRC 아카이브가 감행한 주체의 전복과 공간의 확장, 그리고 사면 기록을 통한 진실의 인양은 탈식민적 아카이브 전회의 획기적인 이정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카이브를 통한 민주적 실험이 언제나 완전무결한 정의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카이브는 본질적으로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망각을 생산하고 기억의 경계를 짓는 배제의 장소이기 때문이다(Derrida, 1995).

이 장에서는 TRC 아카이브가 노출한 실천적 한계를 세 가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퇴각하며 감행한 대규모 문서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파기된 기록의 현상학을 다루며, 아카이브의 물적 부재에 대해 기록학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질문할 것이다. 둘째, 무지개 국가라는 거대한 국가적 화해 서사가 어떻게 피해자 개인이 지닌 사적인 고통과 분노를 제도적으로 억압하는지 그 위험성을 규명한다.³⁾ 마지막으로, 오늘날 TRC 기록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부각되는 접근권의 불평등과 피해자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기술적 민주화가 지닌 역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3) 비록 앞 장에서 TRC 아카이브의 민주적 가치 이면에 숨은 파편적 한계들을 부분적으로 짚어보았으나, 본 장에서는 이를 아카이브가 직면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보다 거시적인 맥락으로 확장하여 총체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5.1 파기된 기록의 현상학

TRC 아카이브가 직면한 가장 물리적이고도 근원적인 한계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퇴각을 앞두고 감행한 대규모 국가기록의 파기 행위였다. 1990년 넬슨 만델라의 석방과 함께 민주화 이행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자, 백인 정권의 국가보안기구와 비밀정보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저지른 불법 고문, 암살,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새로운 민주 정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민주 선거가 치러진 1994년 사이, 남아공 전역의 정부 청사와 보안 기구 외곽에서는 수백만 장의 서류,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디스크, 감시 녹음테이프가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소각되고 파쇄되었다. 이는 기록학 역사상 가장 잔혹한 기록 학살이자 국가적 수준의 강제적 망각 기획이었다.

이러한 조직적 파괴는 TRC가 출범하기도 전에 아카이브 내부에 거대한 물적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TRC 아카이브는 시작부터 과거의 역사를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 완결된 보관소가 아니라, 제도적 완결성을 상실한 부재의 아카이브라는 조건을 마주했다. 실증주의에 기반한 전통 기록학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기록의 대량 소실은 과거의 객관적 진실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 결함이다. 문자로 인쇄된 1차 사료가 사라진 자리에 역사는 쓰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체주의 기록학의 관점에서 파기된 기록은 단순히 없어진 무(無)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의 은폐성과 권력의 본질적 강박을 증명하는 강력한 흔적의 현상학으로 재해석된다(Harris, 2007).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그토록 결벽증적으로 불태워버리고자 했던 문서들의 목록, 텅 빈 서고, 파기 명령이 담긴 지시서 등이 부재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가해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가장 생생한 물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식민적 아카이브는 이 사라진 문서들을 복원할 수 없는 실패의 영역으로 밀어 두는 대신, 공백의 주변을 맴도는 억압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안적 모색을 시도해야만 했다. 이에 TRC 아카이브는 국가 권력이 강제한 망각의 심연에 맞서기 위해, 앞서 고찰한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을 아카이브의 전면에 배치하는 전략을 취했다. 가해자가 문서를 불태워 법적 사실을 지워버렸다면, TRC는 피해자들의 신체와 내면에 날인된 트라우마의 언어를 인양하여 아카이브의 새로운 골조를 세웠다. 이는 기록의 부재를 단순한 행정적 손실로 보지 않고, 권력의 폭력성에 맞서 기억의 전면화로 저항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된 기록의 현상학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아카이브의 한계를 남겼다. 가해자의 문서가 소멸한 자리에 들어선 피해자의 구술은 인간 기억의 가변성이나 트라우마로 인한 파편성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사실의 세부 조각들(예컨대 정확한 날짜, 학살 명령을 내린 최종 배후의 이름, 비밀 자금의 출처 등)을 완벽하게 되살려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인권 침해의 명확한 사법적 책임 규명은 끊임없이 지연되거나 미완의 상태로 남았다. 결국 TRC 아카이브가 보여준 부재의 기록에 대한 대안은, 이행기 정의의 아카이브가 결코 과거의 진실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없다는 구조적 불완전성을 명징하게 노출한 사례이다. 가해자가 소각해 버린 공식 문서의 공백은 피해자의 구술 증언만으로는 완전히 대체될 수 없었기에, 아카이브 내부에는 메울 수 없는 사법적·실증적 공백이 영구히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완전한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상실의 제약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아카이브를 영구히 닫히지 않는 열린 투쟁의 공간으로 전환시킨다. 즉, TRC 아카이브는 과거사 청산의 종착지가 아니라, 메울 수 없는 결핍을 안은 채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미래의 과제로 열어두는 비판적 성찰의 장이 되는 것이다.

5.2 국가적 화해 서사와 개인적 고통의 간극

TRC 아카이브가 마주한 또 다른 구조적·서사적 한계는, 이른바 제도화된 기억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서사적 가위질과 배제의 폭력성이었다. 민주화 이행기 남아공의 최우선 과제는, 인종과 계급으로 찢겨진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국가통합이었다.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가 이끄는 TRC는 이 거대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공동체 철학인 우분투(Ubuntu,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정신에 기반해 무지개 국가라는 국가적 화해 서사를 전면에 내세웠다(Boraine, 2000). 문제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방대한 기록을 분류·편집하는 과정이 바로 이 국가적 대의와 통합의 정치적 틀에 맞춰 기획되면서, 국가의 공식 서사와 피해자의 사적 기억들 사이에 심각한 간극이 발생했다는 지점이다.

제도화된 기억의 위험성은 피해자의 고통을 국가적 통합 서사 속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되었다. 아카이브의 분류 체계와 TRC의 최종 보고서 서사는 피해자의 증언이 최종적으로 복수심의 극복과 기독교적 용서 및 화해라는 해피엔딩으로 귀결되도록 압박하고 유도하는 구조를 지녔다(Posel & Simpson, 2002). 가해자를 향해 타오르는 복수심이나 국가를 향한 철저한 사법적 청구, 배상 요구는 국가통합이라는 거대 서사를 해치는 불온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치부되어 기록의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아카이브 서사에서 과감히 생략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국가 체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실존적 고통을 청산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법제화되고 선포된 화해의 아카이브는 세련된 공식 보고서와 공적 문서로 박제되었지만,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못한 채 사적 영역에 고스란히 방치되었다. 피해자들은 국가적 화해라는 거대 담론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할 권리와 옹호적 정의를 청구할 권리를 초법적으로 유예당하는 서사적 폭력을 겪어야 했다(Wilson, 2001).

결국 TRC의 제도화된 기억은 아카이브가 국가 권력의 주도로 제도화되고 권력의 정당성을 보위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배타적 주권으로 작동하게 됨을 보여준다. 즉, 하위주체들이 지닌 복수(復讐)적이고 이질적인 목소리를 화해라는 단일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녹여버리는 균질화의 폭력을 행사했다. TRC 아카이브가 남긴 이러한 한계는 제도화된 기억의 단단한 틈새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오는 개인의 사적 고통,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분노,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원한의 언어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대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성찰적 과제를 남긴다.

5.3 디지털 아카이브의 접근권과 윤리적 문제

21세기 들어 남아공 TRC 기록을 둘러싼 가장 현대적인 도전은, 기록이 디지털 환경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촉발된 기술적 소외와 윤리적 딜레마이다. TRC가 수집한 방대한 구술 증언 테이프, 사면 신청 서류, 청문회 시청각 녹화물 등은 남아공역사아카이브(SAHA)와 위트와터스랜드 대학교의 주도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 특히 SAHA의 ‘진실을 향한 권리 프로젝트(Right to Truth Project)’는 청문회 문서를 전산화하여 검색 가능하게 만들고 SABC의 시청각 기록과 연계함으로써 탈식민 기록 실천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SAHA, 2006).

그러나 외견상 기억의 민주화를 이룬 듯한 이 디지털 전환 기획들은 남아공 자체의 재원이 아니라, 미국의 애틀랜틱 필란트로피(The Atlantic Philanthropies)나 멜론 재단(Mellon Foundation) 같은 북반구 거대 자본의 해외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집행되었다. 이러한 자본 구조는 글로벌 유통 인프라인 이타카(Ithaka)가 배포권을 통제 한 남아공의 국가적 디지털 프로젝트 DISA(Digital Imaging South Africa)나 알루카(Aluka)의 남부아프리카 해방투쟁 아카이브 사례에서 더욱 집약적으로 드러난다(Pickover, 2005, 9). 픽오버(Michele Pickover, 2005, 6-11)가 지적 하듯, 미국의 대형 대학이나 글로벌 게이트키퍼 기구들과 결탁한 유통 채널로 자료들이 편입되면서, 현지 기록들은 북반구 학술 시장의 소비와 요구에 맞게 탈맥락적으로 가공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더욱이 디지털화가 곧바로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역사 기록의 디지털화는 지리적·계급적 디지털 정보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하위주체들을 장벽 너머로 다시 한번 배제하는 역설을 초래했다. 컴퓨터 기기가 부재하고 인터넷 인프라가 미비한 남아공 변두리의 흑인집단거주구나 소외된 농촌 지역의 실제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피와 눈물이 담긴 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반면 서구 선진국의 연구자들

이나 대도시의 특권층은 이 고통의 데이터들을 손쉽게 열람하고 학문적 자산으로 소비한다. 결국 디지털 아카이브는 물리적 장벽을 완화했다는 성과 이면에서, 정작 하위주체들의 해방투쟁과 고통의 서사를 지식 시장의 자양분으로 약탈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제국주의를 재생산하게 되었다.

또 다른 심각한 맹점은 디지털 공간의 무제한적 개방성이 가져온 피해자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과 트라우마의 상품화라는 윤리적 침해이다. 1990년대 청문회 당시 피해자들이 쏟아낸 증언은 치유와 연대라는 특수한 관계적 맥락 속에서 행해진 엄숙한 실존적 행위였다. 이들의 구술은 단순한 정보의 파편이 아니라 친족 관계의 파괴와 일상의 복원을 향한 처절한 서사였다. 그러나 이 증언들이 아무런 맥락적 여과나 보호 장치 없이 웹상에 무기한 표류하면서 서사적 탈맥락화가 현실화되었다(Ross, 2003). 공동체의 치유라는 실존적 맥락은 소거된 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상업적 검색 알고리즘과 개방성 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과거의 참혹한 성폭력이나 고문의 기억이 온라인 공간에서 무한 복제되고 영구히 소비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최근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그룹인 블랙키비스트(Blackivists)가 디지털 감시와 메타데이터 보호, 동의권과 기억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디지털 자기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흐름은 이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윤지수, 2026, 11-13). 역사적 정의라는 대의를 앞세운 아카이브의 무조건적인 개방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성찰을 생략함으로써 사적 영역의 재노출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가해로 전도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타자의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공개하는 태도는 도리어 고통의 스펙터클을 가상 공간에 박제하는 디지털 재트라우마화의 폭력을 낳을 수 있다.

결국 TRC 기록의 디지털화 실험은 탈식민주의의 아카이브가 성찰 없는 기술 관료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정보 개방주의와 결탁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기술적 민주화라는 화려한 미명하에 자행되는 정보의 공유와 유통은,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에 대한 윤리적 통제가 결여될 때 또 다른 식민적 착취로 변질될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패는 기술적 구축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이면에 도사린 불평등을 끊임없이 교정하는 노력에 달렸다. 나아가 누가 기억을 소유하고 누가 다시 상처 입을가를 성찰하게 하며, 피해 기억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가상 공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기록학적 과제를 우리에게 남긴다.

6. 나오는 글

남아공 TRC 아카이브의 구축과 이행 과정은 근대 서구 중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흔들고, 탈식민주의의 아카이브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선구적 사례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하에서 통제의 기제였던 국가 아카이브는 이행기 정의 속에서 시민들의 기억과 연대를 위한 공적 공유지로 재구성되었다. TRC의 성취는 데리다가 폭로한 권력의 강박적 독점인 '아카이브 열병'에 맞서, 해리스가 주창한 '정의의 아카이브' 가치를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과감하게 밀어붙인 전위적인 민주적 실험에 있다. 비록 가해자들의 문서 조각이 남긴 물적 공백, 무지개 국가 서사의 제도적 억압,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명확한 결락이 존재할지라도, 이 미완의 상태야말로 후대에게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는 가장 역동적인 기억의 유산이다. 아카이브를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균열을 내며 개입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공간으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이 거대한 실험과 성찰적 한계는 여전히 식민주의의 상흔, 분단 체제의 폭력, 그리고 국가폭력의 과거사 청산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와 기록학계에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역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해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전통적 과거사 정립에서부터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에 이르는 동시대 사회적 참사의 기록화 작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록의 법적 증거력 확보라는 협소한 실증주의적 틀이나 정권 교체에 따라 기억의 명멸이 반복되는 취약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이경래, 2015).

남아공 TRC 아카이브가 한국 사회에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과거사 아카이브를 사법적 단죄의 수단이나 행정 문서의 보관소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종종 법률적 책임 공방과 보상금 산정이라는 계량적 틀에 갇혀 피해자의 주관적 치유와 공동체의 애도라는 가치를 놓치곤 했다. 이제 우리는 기록을 증거의 영역에서 기억과 환대의 영역으로 이전시키고, 공식 문서의 틈새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구술과 트라우마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권력의 성격에 따라 단일한 영웅 서사나 강요된 화해의 서사로 기억이 제도화되는 경향을 경계하고, 아카이브 내부의 다성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식 서사에서 미끄러지는 이질적인 목소리들과 사적 고통의 서사들을 공존시켜, 가해의 사실과 피해의 비명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경합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탈식민적 아카이브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주권과 아카이브 윤리의 정립이 시급하다. 최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물의 80% 이상이 비공개로 잠겨 있는 현실이 보여주듯(김판, 2025), 한국의 과거사 아카이브는 일차적으로 국가 권력의 관료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기록 개방을 전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아카이브 민주화는 국가 독점의 장벽을 허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사 기록의 디지털화와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 계층의 접근권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 공유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고통을 스펙터클로 소비하거나 디지털 재트라우마화를 유발하는 폭력을 차단할 엄격한 윤리적 프로토콜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결국 남아공 TRC 아카이브가 촉발한 탈식민적 전회는 동시대 기억정치의 핵심이자 물적 토대이다. 한국 사회가 국가폭력의 상흔을 넘어 진정한 통합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아공 TRC가 남긴 기억과 망각의 경계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기록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타자의 고통을 끝없이 환대하는 지속 가능한 기억의 정치를 아카이브라는 물적 토대 위에 안착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김판 (2025.5.16.). 5·18 진상조사위 생산자료 84% ‘비공개’... 4년 조사 무용지물.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7299462&code=11121100&cp=nv>
- 윤지수 (2026). 아카이브의 탈식민화: 기억 주권, 제도적 복원, 그리고 디지털 윤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6(2), 1-22.
<http://doi.org/10.14404/JKSARM.2026.26.2.001>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https://doi.org/10.20923/kjas.2015.46.005>
- Boraine, A. (2000). *A country unmasked: Inside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ewer, J. D. (1994). *Black and blue: Policing in South Africa*. Oxford: Clarendon Press.
- Derrida, J. (1995).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Religion and Postmodernism)*. Translated by Prenowitz, 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lamini, J. (2020). *The Terrorist Album: Apartheid's Insurgents, Collaborators, and the Security Pol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undy, K. W. (1986). *The militarization of South African poli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Harris, V. (2000). "They should have destroyed more": The destruction of public records by the South African state in the final years of apartheid, 1990-1994.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Southern Africa*, (42), 29-56.
- Harris, V. (2002).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1), 63-86.
<https://doi.org/10.1007/BF02435631>

- Harris, V. (2007). Archives and justice: A South African perspective.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Pickover, M. (2005). Negotiations, contestations and fabrications: The politics of archives in South Africa ten years after democracy. *Innovation*, (30), 1-11.
- Posel, D. & Simpson, G. (Eds.). (2002). Commissioning the past: Understanding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Braamfontein: Witwatersrand University Press.
- Posel, D. (2001). Race as common sense: Racial classification in twentieth-century South Africa. *African Studies Review*, 44(2), 87-113. <https://doi.org/10.2307/525576>
- Ross, F. C. (2003). Bearing witness: Women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outh Africa. London: Pluto Press.
- 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SAHA] (2006). A Guide to Archival Sources Relating to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AHA. Available: https://www.saha.org.za/resources/docs/PDF/Projects/trc_directory.pdf.
- Stoler, A. L. (2002). Colonial archives and the arts of governance. *Archival Science*, 2(1), 87-109. <https://doi.org/10.1007/BF02435632>
- Stoler, A. L. (2009). Along the archival grain: Epistemic anxieties and colonial common sens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1998).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 Vol 1. Available: <https://www.justice.gov.za/trc/report/finalreport/volume%201.pdf>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1998).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 Vol 2. Available: <https://www.justice.gov.za/trc/report/finalreport/volume%202.pdf>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1998).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 Vol 5. Available: <https://www.justice.gov.za/trc/report/finalreport/Volume5.pdf>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2003).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 Vol 6. Available: http://www.justice.gov.za/trc/report/finalreport/vol6_s2.pdf
- Wilson, R. A. (2001). The politic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 Legitimizing the post-apartheid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Pan (2025, May 16). 84% of Materials Produced by the 5.18 Truth Commission Kept Closed: 4 Years of Investigation Rendered Useless.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7299462&code=11121100&cp=nv>
- Lee, Kyong Rae (2015).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5-44. <https://doi.org/10.20923/kjas.2015.46.005>
- Yoon, Jisu (2026). Decolonizing the archive: Memory sovereignty, institutional repair, and digital eth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6(2), 1-22. <http://doi.org/10.14404/JKSARM.2026.26.2.001>